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38
----------	-------

발의연월일 : 2025. 6. 24.

발 의 자 : 서미화 · 이재관 · 박정현
김한규 · 최혁진 · 김 윤
박지원 · 정진욱 · 권향엽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7조제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때

제87조제6호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7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u><신 설></u>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59조제2항에 따른 <u>신고 또는 변경신고</u> 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 16. (생략)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 ----- ----- ----- ----- ----. 1. 제59조제2항에 따른 <u>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때</u>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벌칙)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u> ----- ----- ----- 7. ~ 16. (현행과 같음)